

해링턴플레이스 명륜역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10.31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1-852-010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0.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0.31(금)	25.11.10.(월)	25.11.11.(화)	25.11.12.(수)	25.11.18.(화)	25.11.21.(금)~ 25.11.25.(화)	25.12.01.(월)~ 25.12.03.(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해링턴플레이스명륜역.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0.3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10.31. 이전부터 계속 거주**)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11.10.(월)	25.11.11.(화)	25.11.12.(수)	25.11.18.(화)	25.11.21.(금)~ 25.11.25.(화)	25.12.01.(월)~ 25.12.03.(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비규제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6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5% 3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25세대)에 대하여 공급금액(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할인)하여 공급 합니다.

■ 아이·맘플랜 적용 세대

구분(약식표기)	74A	84A	84B	84C	84D	84E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	6	6	6	6	6	37
신혼부부 특별공급	5	4	4	4	4	4	25
합계	12	10	10	10	10	10	62

- 분양가 인하(할인)규정에 따라 선별된 특별공급 세대 중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외 유형(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 무순위, 선착순 등)의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타 유형 미달로 무작위 당첨된 세대(다자녀가구, 신혼부부)에 대한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다자녀가구 미달, 신혼부부 경쟁 시 신혼부부 신청자 중 다자녀 가구 미달분에 당첨된 신혼부부 무작위 당첨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다자녀가구로 신청해서 다자녀가구로 당첨된 세대 또는 신혼부부로 신청해서 신혼부부로 당첨된 세대만 할인 적용 가능 합니다.

「아이·맘 부산플랜」의 분양가 인하(할인) 혜택은 해당 세대의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적용 받지 아니합니다.

- 위 표와 같이 각 유형별·주택형별 「아이.맘 부산플랜」 적용 배정이 되고 배정된 세대수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추첨의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해당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아이.맘 부산플랜」에 선별되는 세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되는 동,호수 추첨과는 무관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과-46086호(2025.10.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460-2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3~46층 3개동 중 공동주택 2개동 총 242세대(특별공급 113세대 / 일반공급 1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13세대(기관추천 23세대, 다자녀가구 37세대, 신혼부부 25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2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9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519	01	074.6797A	74A	74.6797	28.7190	103.3987	36.2468	139.6455	9.5785	43	4	7	5	1	4	21	22	1
	02	084.8830A	84A	84.8830	34.4544	119.3374	41.1990	160.5364	10.8872	36	4	6	4	1	3	18	18	1
	03	084.6971B	84B	84.6971	34.1517	118.8488	41.1087	159.9575	10.8633	34	3	6	4	1	3	17	17	1
	04	084.9819C	84C	84.9819	33.5253	118.5072	41.2471	159.7543	10.8999	43	4	6	4	1	4	19	24	1
	05	084.8666D	84D	84.8666	32.4970	117.3636	41.1911	158.5547	10.8851	43	4	6	4	1	4	19	24	1
	06	084.7247E	84E	84.7247	33.2937	118.0184	41.1221	159.1405	10.8669	43	4	6	4	1	4	19	24	1
합 계										242	23	37	25	6	22	113	129	6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공부정리 결과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공동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계획변경,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약식표기	동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5%)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7회(5%자납)	
										26.02.27	26.07.28	26.12.28	27.05.26	27.11.26	28.05.26	28.10.27	
74A	101동 (4호)	43	3층	1	257,461,159	383,148,841	640,610,000	5,000,000	27,030,500	64,061,000	64,061,000	64,061,000	64,061,000	64,061,000	64,061,000	32,030,500	192,183,000
			4층~5층	2	259,587,210	386,312,790	645,900,000	5,000,000	27,295,000	64,590,000	64,590,000	64,590,000	64,590,000	64,590,000	64,590,000	32,295,000	193,770,000
			6층~9층	4	262,078,990	390,021,010	652,100,000	5,000,000	27,605,000	65,210,000	65,210,000	65,210,000	65,210,000	65,210,000	65,210,000	32,605,000	195,630,000
			10층~14층	5	264,570,770	393,729,230	658,300,000	5,000,000	27,915,000	65,830,000	65,830,000	65,830,000	65,830,000	65,830,000	65,830,000	32,915,000	197,490,000
			15층~19층	5	267,022,360	397,377,640	664,400,000	5,000,000	28,220,000	66,440,000	66,440,000	66,440,000	66,440,000	66,440,000	66,440,000	33,220,000	199,320,000
			21층~25층	5	269,634,710	401,265,290	670,900,000	5,000,000	28,545,000	67,090,000	67,090,000	67,090,000	67,090,000	67,090,000	67,090,000	33,545,000	201,270,000
			26층~30층	5	272,247,060	405,152,940	677,400,000	5,000,000	28,87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33,870,000	203,220,000
			31층~35층	5	274,819,220	408,980,780	683,800,000	5,000,000	29,190,000	68,380,000	68,380,000	68,380,000	68,380,000	68,380,000	68,380,000	34,190,000	205,140,000
			36층~40층	5	277,431,570	412,868,430	690,300,000	5,000,000	29,515,000	69,030,000	69,030,000	69,030,000	69,030,000	69,030,000	69,030,000	34,515,000	207,090,000
			41층~46층	6	280,043,920	416,756,080	696,800,000	5,000,000	29,840,000	69,680,000	69,680,000	69,680,000	69,680,000	69,680,000	69,680,000	34,840,000	209,040,000
84A	102동 (2호)	36	4층~5층	2	299,576,260	445,823,740	745,400,000	5,000,000	32,270,000	74,540,000	74,540,000	74,540,000	74,540,000	74,540,000	74,540,000	37,270,000	223,620,000
			6층~9층	4	302,469,940	450,130,060	752,600,000	5,000,000	32,63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37,630,000	225,780,000
			10층~14층	5	305,323,430	454,376,570	759,700,000	5,000,000	32,985,000	75,970,000	75,970,000	75,970,000	75,970,000	75,970,000	75,970,000	37,985,000	227,910,000
			15층~19층	5	308,217,110	458,682,890	766,900,000	5,000,000	33,345,000	76,690,000	76,690,000	76,690,000	76,690,000	76,690,000	76,690,000	38,345,000	230,070,000
			21층~25층	5	311,191,170	463,108,830	774,300,000	5,000,000	33,715,000	77,430,000	77,430,000	77,430,000	77,430,000	77,430,000	77,430,000	38,715,000	232,290,000
			26층~30층	5	314,205,420	467,594,580	781,800,000	5,000,000	34,090,000	78,180,000	78,180,000	78,180,000	78,180,000	78,180,000	78,180,000	39,090,000	234,540,000
			31층~35층	5	317,219,670	472,080,330	789,300,000	5,000,000	34,465,000	78,930,000	78,930,000	78,930,000	78,930,000	78,930,000	78,930,000	39,465,000	236,790,000
			36층~40층	5	320,193,730	476,506,270	796,700,000	5,000,000	34,835,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39,835,000	239,010,000
84B	102동 (1호)	34	6층~9층	4	301,224,050	448,275,950	749,500,000	5,000,000	32,475,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37,475,000	224,850,000
			10층~14층	5	304,077,540	452,522,460	756,600,000	5,000,000	32,830,000	75,660,000	75,660,000	75,660,000	75,660,000	75,660,000	75,660,000	37,830,000	226,980,000
			15층~19층	5	306,931,030	456,768,970	763,700,000	5,000,000	33,185,000	76,370,000	76,370,000	76,370,000	76,370,000	76,370,000	76,370,000	38,185,000	229,110,000
			21층~25층	5	309,945,280	461,254,720	771,200,000	5,000,000	33,560,000	77,120,000	77,120,000	77,120,000	77,120,000	77,120,000	77,120,000	38,560,000	231,360,000
			26층~30층	5	312,919,340	465,680,660	778,600,000	5,000,000	33,930,000	77,860,000	77,860,000	77,860,000	77,860,000	77,860,000	77,860,000	38,930,000	233,580,000
			31층~35층	5	315,893,400	470,106,600	786,000,000	5,000,000	34,3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39,300,000	235,800,000
			36층~40층	5	318,867,460	474,532,540	793,400,000	5,000,000	34,670,000	79,340,000	79,340,000	79,340,000	79,340,000	79,340,000	79,340,000	39,670,000	238,020,000
84C	101동 (1호)	43	3층	1	294,673,080	438,526,920	733,200,000	5,000,000	31,660,000	73,320,000	73,320,000	73,320,000	73,320,000	73,320,000	73,320,000	36,660,000	219,960,000
			4층~5층	2	297,486,380	442,713,620	740,200,000	5,000,000	32,010,000	74,020,000	74,020,000	74,020,000	74,020,000	74,020,000	74,020,000	37,010,000	222,060,000

			6층~9층	4	300,339,870	446,960,130	747,300,000	5,000,000	32,365,000	74,730,000	74,730,000	74,730,000	74,730,000	74,730,000	74,730,000	37,365,000	224,190,000
			10층~14층	5	303,193,360	451,206,640	754,400,000	5,000,000	32,720,000	75,440,000	75,440,000	75,440,000	75,440,000	75,440,000	75,440,000	37,720,000	226,320,000
			15층~19층	5	306,046,850	455,453,150	761,500,000	5,000,000	33,075,000	76,150,000	76,150,000	76,150,000	76,150,000	76,150,000	76,150,000	38,075,000	228,450,000
			21층~25층	5	309,020,910	459,879,090	768,900,000	5,000,000	33,445,000	76,890,000	76,890,000	76,890,000	76,890,000	76,890,000	76,890,000	38,445,000	230,670,000
			26층~30층	5	312,035,160	464,364,840	776,400,000	5,000,000	33,820,000	77,640,000	77,640,000	77,640,000	77,640,000	77,640,000	77,640,000	38,820,000	232,920,000
			31층~35층	5	315,009,220	468,790,780	783,800,000	5,000,000	34,190,000	78,380,000	78,380,000	78,380,000	78,380,000	78,380,000	78,380,000	39,190,000	235,140,000
			36층~40층	5	317,983,280	473,216,720	791,200,000	5,000,000	34,560,000	79,120,000	79,120,000	79,120,000	79,120,000	79,120,000	79,120,000	39,560,000	237,360,000
			41층~46층	6	320,957,340	477,642,660	798,600,000	5,000,000	34,930,000	79,860,000	79,860,000	79,860,000	79,860,000	79,860,000	79,860,000	39,930,000	239,580,000
84D	101동 (2호)	43	3층	1	291,859,780	434,340,220	726,200,000	5,000,000	31,31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36,310,000	217,860,000
			4층~5층	2	294,632,890	438,467,110	733,100,000	5,000,000	31,655,000	73,310,000	73,310,000	73,310,000	73,310,000	73,310,000	73,310,000	36,655,000	219,930,000
			6층~9층	4	297,446,190	442,653,810	740,100,000	5,000,000	32,005,000	74,010,000	74,010,000	74,010,000	74,010,000	74,010,000	74,010,000	37,005,000	222,030,000
			10층~14층	5	300,299,680	446,900,320	747,200,000	5,000,000	32,360,000	74,720,000	74,720,000	74,720,000	74,720,000	74,720,000	74,720,000	37,360,000	224,160,000
			15층~19층	5	303,112,980	451,087,020	754,200,000	5,000,000	32,71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37,710,000	226,260,000
			21층~25층	5	306,046,850	455,453,150	761,500,000	5,000,000	33,075,000	76,150,000	76,150,000	76,150,000	76,150,000	76,150,000	76,150,000	38,075,000	228,450,000
			26층~30층	5	309,020,910	459,879,090	768,900,000	5,000,000	33,445,000	76,890,000	76,890,000	76,890,000	76,890,000	76,890,000	76,890,000	38,445,000	230,670,000
			31층~35층	5	311,954,780	464,245,220	776,200,000	5,000,000	33,810,000	77,620,000	77,620,000	77,620,000	77,620,000	77,620,000	77,620,000	38,810,000	232,860,000
			36층~40층	5	314,888,650	468,611,350	783,500,000	5,000,000	34,175,000	78,350,000	78,350,000	78,350,000	78,350,000	78,350,000	78,350,000	39,175,000	235,050,000
			41층~46층	6	317,862,710	473,037,290	790,900,000	5,000,000	34,545,000	79,090,000	79,090,000	79,090,000	79,090,000	79,090,000	79,090,000	39,545,000	237,270,000
84E	101동 (3호)	43	3층	1	293,467,380	436,732,620	730,200,000	5,000,000	31,510,000	73,020,000	73,020,000	73,020,000	73,020,000	73,020,000	73,020,000	36,510,000	219,060,000
			4층~5층	2	296,280,680	440,919,320	737,200,000	5,000,000	31,860,000	73,720,000	73,720,000	73,720,000	73,720,000	73,720,000	73,720,000	36,860,000	221,160,000
			6층~9층	4	299,134,170	445,165,830	744,300,000	5,000,000	32,215,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37,215,000	223,290,000
			10층~14층	5	301,947,470	449,352,530	751,300,000	5,000,000	32,565,000	75,130,000	75,130,000	75,130,000	75,130,000	75,130,000	75,130,000	37,565,000	225,390,000
			15층~19층	5	304,800,960	453,599,040	758,400,000	5,000,000	32,920,000	75,840,000	75,840,000	75,840,000	75,840,000	75,840,000	75,840,000	37,920,000	227,520,000
			21층~25층	5	307,775,020	458,024,980	765,800,000	5,000,000	33,290,000	76,580,000	76,580,000	76,580,000	76,580,000	76,580,000	76,580,000	38,290,000	229,740,000
			26층~30층	5	310,749,080	462,450,920	773,200,000	5,000,000	33,66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38,660,000	231,960,000
			31층~35층	5	313,682,950	466,817,050	780,500,000	5,000,000	34,025,000	78,050,000	78,050,000	78,050,000	78,050,000	78,050,000	78,050,000	39,025,000	234,150,000
			36층~40층	5	316,657,010	471,242,990	787,900,000	5,000,000	34,395,000	78,790,000	78,790,000	78,790,000	78,790,000	78,790,000	78,790,000	39,395,000	236,370,000
			41층~46층	6	319,631,070	475,668,930	795,300,000	5,000,000	34,765,000	79,530,000	79,530,000	79,530,000	79,530,000	79,530,000	79,530,000	39,765,000	238,59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총 분양대금의 65%이며 60%는 이자후불제 대출, 5%는 자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비용,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임시사용승인(또는 동별 사용검사)을 통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 납부시 공급계약서 상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공급금액의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했을 경우 연체료를 최우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할인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본 공동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단 잔금은 안내한 입주지정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일은 변경 될 수 있고 입주 예정일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 예정 월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계약시 납부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납부 합니다.(1/2씩 부담, 36p참고)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브랜드,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사업주체 사정 및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74A	84A	84B	84C	84D	84E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	1	1	5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1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	1	-	1	4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1	2	1	7
	장애인	부산광역시	1	1	1	-	-	4
		울산광역시	-	-	-	-	1	1
		경상남도	-	-	-	1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	6	6	6	6	6	37
신혼부부 특별공급		5	4	4	4	4	4	2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1	1	1	1	6
생애최초 특별공급		4	3	3	4	4	4	22
합 계		21	18	17	19	19	19	11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신생아(공공)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른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3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출산특례 관련은 해당 모집공고 10p, 11p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tr> <th>배점항목</th><th>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 <th></th><th></th><th>기준</th><th>점수</th></tr> <tr> <td>계</td><td>100</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3명</td><td>35</td></tr> <tr> <td>2명</td><td>25</td></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2명</td><td>10</td></tr> <tr> <td>1명</td><td>5</td></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rowspan="2">-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 <td>한부모 가족</td><td>5</td></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른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 관련은 해당 모집공고 10p, 11p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비고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0.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d colspan="2">건축물 종류</td><td>지방세정 시가표준액</td></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특례 관련은 해당 모집공고 10p, 11p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head><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head><tbody><tr><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tr><td>3명</td><td>20</td><td></td><td></td></tr><tr><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tbody></table>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청약신청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td></tr></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 장소 및 신청 방법	당첨자 발표일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11.10(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현장접수)사업주체 견본주택(10:00~14:00)	2025.11.18.(화)
일반공급	1순위	2025.11.11.(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2순위	2025.11.12.(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1.18.(화) ~ 2025.11.27.(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11.1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25.11.21.(금) ~ 25.11.25.(화) 10:00 ~ 16:00	해링턴플레이스 명륜역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방식 등은 별도 통보 예정	
	일반공급			

※ 당첨자에 한해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분양 홈페이지(<http://www.해링턴플레이스명륜역.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본인 외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반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대표번호가 사용 중이신 통신사에 의해 스팸 등록되어, 서류제출 및 계약/예비입주자 추첨 등 기타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신 경우 당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사전에 당사의 대표번호 스팸 등록 확인 및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오기입과 통신사 스팸등록 등으로 계약 및 예비입주자 추첨 등 주요 일정 전달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 주요 일정 또는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인감도장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배우자	※ 재외동포: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불가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받기 위한 경우 - 단,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	복무확인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견본주택에 비치 -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특별공급 중 출산 특례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해당기관추천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및 직계비속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상세”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출산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7년 이내의 혼인 기간 및 혼인 여부 확인, “상세”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31~32p 참조)
	○		비사업자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출산 이행 각서		•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32~33p 참조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1년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 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 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33p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31~32p 참조)
		○	비사업자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함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32~33p 참조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생아 우선공급일 대상자 중 혼인중이 아닐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도장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31.)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구분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 (직인 날인) ③ 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③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자격취득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④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재직증명서	①, ②, ③, ④ 세무서,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세무서

구분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방문판매점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① 세무서, 해당 직장
	무직자(만19세 이상)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건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www.wetax.go.kr)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 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을 경우 전국 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③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①③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인감도장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받기 위한 경우 - 단,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낙찰 증빙서류: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해당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④채권자의 확인서류: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해외에서 받은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점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점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도장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31)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5.12.01.(월) ~ 25.12.03.(수) (3일간) 10:00 ~ 16:00	해링턴플레이스 명륜역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증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BNK부산은행	101-2087-1941-05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아파트 분양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가 상이 하오니, 입금시 유의하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접수 장소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접수 장소에 비치
	○		인지세 납부 증명서 (정부수입인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후 사본 제출 (사업주체 및 계약자 부담) • 수입인지 세액 - 아파트 공급계약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해당):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사업주체 및 계약자 부담(1/2)]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당첨자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 요구 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신 불가)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3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 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해당 세대의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사업주체 및 계약자 부담 (각 50%)] : ①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통장 부활신청이 가능하나 일정기간동안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부부의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당첨 시 아래와 같이 처리됨)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1) 부부가 특별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2) 부부 외 세대원이 특별공급에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 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외)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동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벌칙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제 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 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고 부정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 개정예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사업이며, 중도금 65% 중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5%는 자납/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 이용 계약자 한정)
- 상기의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개시일(변경 통지시 변경일) 전일까지만 사업주체에서 이자를 대납하며, 입주개시일(변경 통지시 변경일)부터는 금융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여 계약자가 직접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입주시(입주 지정기간) 대납 된 대출금(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변경 통지시 변경기간) 이내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 대출 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대출 일정 등)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가 미이행 될 것으로 판단될때에는 사업주체는 전매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

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 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주체의 인지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발생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 아파트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 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 표기	공급가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74A	25,700,000	2,570,000	23,130,000	
84A/84B/84C/84D/84E	28,500,000	2,850,000	25,650,000	

2)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계약금, 잔금)	BNK부산은행	101-2093-3787-09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파트 분양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가 상이 하오니, 입금시 유의하기 바람.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101동 501호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 102동 1101호의 경우 '1021101홍길동'으로 기재)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피난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철재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계약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달로그 기준이며, 계약관련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카달로그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전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 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히통, 선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확장시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하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단장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과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될 수 있고,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발코니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발코니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 유상옵션 안내사항 (공통)

-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일정과 별도로 진행되며, 해당 일정은 **추후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유상옵션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 해제 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옵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선택품목 총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시공사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시공사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원상복구 및 제품 감가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상기 금액은 기본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 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추가 계약 및 계약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유상옵션 계약 체결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 대금에 대하여 시공사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유상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상옵션

①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옵션	설치위치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74A	옵션1	거실+침실1(안방)	4,000,000	400,000	3,600,000	
	옵션2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6,800,000	680,000	6,120,000	
84 전타입	옵션1	거실+침실1(안방)	4,000,000	400,000	3,600,000	
	옵션2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7,000,000	700,000	6,300,000	

-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선택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선택시 거실 및 안방의 매립형 냉매배관(기본제공)과 드레인, 콘센트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등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별 선택이 불가능하며,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이유로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② 가전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기오븐레인지		전타입	350,000	35,000	315,000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전타입	900,000	90,000	810,000	삼성전자
인덕션(3구)	쿠쿠	전타입	400,000	40,000	360,000	
	삼성	전타입	800,000	80,000	720,000	
빌트인 냉장/냉동/김치냉장고 + 수납가구추가		전타입	6,000,000	600,000	5,400,000	삼성전자
비데일체형 양변기	공용/부부 욕실	전타입	1,290,000	129,000	1,161,000	
매립형 정수기		전타입	1,200,000	120,000	1,080,000	쿠쿠

욕실 복합형환풍기	복합형 환풍기[부부·공용 욕실]	전타입	700,000	70,000	630,000	힘펠
	드레스룸 제습기	전타입	850,000	85,000	765,000	코스텔
	거실 전동 커튼 레일	74A	700,000	70,000	630,000	
		84(전타입)	800,000	80,000	720,000	
	현관 에어브러쉬 + 펫 브러쉬	전타입	500,000	50,000	450,000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의 사이즈, 디자인, 제조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품 단종 및 신제품 출시 등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동등 사양의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제품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됩니다.
- 설치제품은 견본주택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공사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몰딩, 마감, 가구 등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쿡탑은 3구 하이라이트가 설치되며 주방에는 별도의 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가스배관은 보일러까지만 설치되며 세대 내부로 인입되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가전 옵션 미 선택 시 기본 가구도어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복합형 환풍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에 따라 세대 타입 별로 키 큰 장의 사이즈는 상이합니다.
-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옵션 미 선택 시 기본 냉장고장이 설치되며, 기본 냉장고장의 키 큰 장의 설치 유무와 사이즈는 세대 타입 별로 상이합니다.
- 설치제품은 제품 단종 및 신제품 출시 등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품번 변경 및 판넬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평면에 따라 문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마감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디자인 월 업스타일링 + 히든도어		74A	8,500,000	850,000	7,650,000	
		84A,84C,84D	8,000,000	800,000	7,200,000	
		84B	9,000,000	900,000	8,100,000	
		84E	10,300,000	1,030,000	9,270,000	
바닥마감(광폭강마루)		74A	500,000	50,000	450,000	
		84(전타입)	630,000	63,000	567,000	
주방 업스타일링	주방 벽/상판 대형 세라믹타일	74A	3,500,000	350,000	3,150,000	
		84A	3,900,000	390,000	3,510,000	
		84B	2,900,000	290,000	2,610,000	
		84C	3,700,000	370,000	3,330,000	
		84D, 84E	4,000,000	400,000	3,600,000	
	주방벽, 상판:대형 세라믹 타일, 플랩 상부장(하부 간접조명), 독립형 후드, 엠보 사각 싱크볼, 고급 주방 액세서리, 무광 싱크수전, 확장 아일랜드(매립형 무선충전기능 콘센트)	74A, 84C	7,100,000	710,000	6,390,000	
		84A	7,300,000	730,000	6,570,000	
		84B	6,500,000	650,000	5,850,000	
		84D, 84E	7,500,000	750,000	6,750,000	
공용욕실 샤워부스		전타입	250,000	25,000	225,000	
고급수전(샤워부스, 샤워수전)		전타입	750,000	75,000	675,000	
현관중문(3연동 중문)		전타입	1,400,000	140,000	1,260,000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의 사이즈, 디자인, 제조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몰딩, 마감, 가구 등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 컨디션에 따라 옵션 시공 부위 및 면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설치 나누기 및 배치 등 본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히든도어 설치 시 침실 바닥 도어 하부에 '도어 캐처'가 설치됩니다.(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변경 및 동등 이상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히든도어 설치 시 손 끼임 방지 대신 안전댐퍼가 적용되어 있으나 허가권자 협의 등으로 손 끼임 방지가 설치될 수 있으며, 형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월 패널 옵션 선택 시 별도의 걸레받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광폭 강마루 (145*1200) 마루의 폭은 ±5mm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업스타일링 옵션 미 선택 시 벽면은 도기질 타일(300*600), 상판은 MMA가 설치됩니다.
- LPM 패널 간의 간격 및 주방 대형 세라믹 타일 벽의 간격 및 나누기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④ 가구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침실2불박이장	74A, 84A	1,500,000	150,000	1,350,000	
		84B, 84C, 84D, 84E	1,700,000	170,000	1,530,000	
	침실3불박이장	84타입 전체	1,700,000	170,000	1,530,000	
	다이닝 장식장(유리장식장)	84C	3,600,000	360,000	3,240,000	
		84D	5,000,000	500,000	4,500,000	
	주방 하부 수납장	84A	1,500,000	150,000	1,350,000	
드레스룸 업스타일링	유리슬라이딩도어+디자인월패널+고급형 시스템 선반+화장대(조명형 거울)+매입형 직부등	74A	4,000,000	400,000	3,600,000	
		84A, 84B, 84D, 84E	4,500,000	450,000	4,050,000	
		84C	5,000,000	500,000	4,500,000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의 사이즈, 디자인, 제조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몰딩, 마감, 가구 등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 컨디션에 따라 옵션 시공 부위 및 면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설치 나누기 및 배치 등 본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 불박이장 옵션은 각각 선택 가능합니다.
- 현관 중문 옵션 미 선택 시 날개벽이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업스타일링 옵션 미 선택 시 파우더장 + 가구도어 + 시스템 가구 + 기본 직부등이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파우더장에 설치된 콘센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조명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디자인 조명	거실 우물천장 라인 매입조명(디밍가능)+주방 라인 매입등+식탁레일등	74A	2,000,000	200,000	1,800,000	
		84 전타입	2,200,000	220,000	1,980,000	
	거실 우물천장 라인 매입조명(디밍가능)+주방 라인 매입등+식탁레일등+실링펜	74A	2,700,000	270,000	2,430,000	
		84 전타입	2,900,000	290,000	2,610,000	

2)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204-826699	진흥기업

※ 아파트 분양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가 상이 하오니, 입금시 유의하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계약금(현금, 수표 등)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101동 501호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11 기타계약자 안내사항

■ 입주예정일: 2029년 0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 사업주체는 '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의거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임.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임
-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 할인은 입주 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 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보상금 지급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단지 위탁관리용역사)에서 선수관리비를 관리예치금으로 부과하며, 관리예치금을 미납한 경우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21.01.25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 개시 약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 37, 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카페라운지, 키즈라운지 등

※ 부대복리시설 명칭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1층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	지하5층	
5.00m	5.00m	2.30m	2.30m	2.30m	2.30m	2.30m	2.10m

■ 타워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타워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타워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102동	201동	
2.10m	5.00m	5.00m	1.61m, 2.10m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등급	최대응답가속도	메르칼리 진도 등급
$I_E = 1.2$	0.218g	VII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계획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 (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 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 조절장치를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82025-104-0001100호	127,475,257,000원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 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특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관리형 토지신탁에 관한 안내

본 분양목적물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위드씨엔디”,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시공사 “진흥기업 주식회사”, 대출기관 겸 우선수익자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수분양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본 사항은 입주자모집공 상 다른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 합니다.

1. 분양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우리자산신탁(주))는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 및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시행위탁자((주)위드씨엔디)에게 있습니다.
2.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분양수입금계좌” 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3.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의 상환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분양목적물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주)위드씨엔디)

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5. 신탁부동산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이 종료(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신탁계약이 일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이후에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탁자는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을 통지하는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VAT별도]

구 분	건축감리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감리
회 사 명	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이정이앤씨
감리금액	₩1,500,000,000	₩616,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10111-2003236
시공사	진흥기업(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송도동, 송도밀레니엄 807호)	110111-0006349
시행 위탁자	(주)위드씨앤디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 71, 2층(사직동)	180111-1166445

12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청약 또는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위해 공사진행 중 견본세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임의로 선정예정임. 견본세대는 준공시 내부마감재 파손부위, 도배, 도장부위만 재시공하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 각 동별 계단실 등 공용부 및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에 물건 등의 적치 행위는 「소방법」에 저촉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피난 안전 등의 사유로 적치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위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2)계약 시 주의사항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3)발코니 확장 / 유상옵션

- 계약자의 발코니확장 공사 및 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을 포함한 계약자의 옵션계약사항은 세대별 개별 계약에 의하여 진행하며, 추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시 시공자가 시공한 사항의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후 해지가 가능함.
- 사업주체는 계약과 관련한 대금의 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으며,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한 납부일자에 금액을 납부해야함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를 할 수 있으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짐)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같이 작성하며, 이후에는 공정상 작성할 수 없습니다.

4)단지 유의사항

- 필로티 옆, 상부 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201동, 102동 저층부는 타워주차기의 작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전면도로 및 차량, 전면 지하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5)입주 및 등기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됨.
- 입주 후 관리비는 통합 산정되며, 입주 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 예정임.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주 후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됨.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 일부를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내에 지상 혹은 지하에 공공시설(기반시설 등)이 설치될 경우, 등기부상에 별도의 등기사항설정(구분지상권 등)이 표시될 수 있음
- 단지내 (공용)보도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은 준공이후 입주인 혹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구성된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됨.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시 현장 여건에 따라 사다리차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사를 해야하며 입주 전 이사업체 및 관리사무소에 이사 여건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 도로의 여건과 교통시설물 등은 당 사업지의 인허가 당시 기준으로 제작되어 부산시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 중 단지 경계부의 시공 및 마감방법, 식재, 레벨차이 등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한전인입박스(PAD S/W)는 본 공사 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위치가 결정될 예정이므로 설계 도서의 위치와 상이할 수 있음.

6)실내 공기질 측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주택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 예정임.

7)인허가 (설계 변경 등)

- 공사 중 현장여건 반영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 경미한 변경사항 ”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앙대로에서 아파트 주출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하는 구간(보도 설치 구간)는 입주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공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는 도로포장(아스콘 등)으로 변경설치 될 수 있음.
- 소방관 진입창은 모델하우스 설치기준(시공 높이, 개폐여부, 창호 크기(FIX창호 포함))과 실제 설치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소방관 진입창은 추후 입주인의 안전과 미관향상, 사용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으로 별도로 안내되는 사항은 준공 시 수분양자에게 승계됨을 인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호실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등) ,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와 명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 장식품은 미술 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 로비, 필로티, 커뮤니티 시설,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에 안내된 커뮤니티 관련 내용은 참고용 이미지로 시공사는 기본 마감만 제공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별도의 정산은 없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일반분양 계약자의 동의 없이 발주처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경비실, 주차 게이트, 도로 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및 지정은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환풍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 수위 등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공동주택부지 내에 지상식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부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복서측 인접 건물(부산 동래구 온천장로 52)배수관로가 사업지 내 일부에 지하관로로 매설되어 조경 처리 후 존치되며,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인지하고 해당 배수관로에 하자, 고장 등이 발생하여 유지·보수·보강 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기로 합니다.
- 3층 84타입의 경우(84C, 84D, 84E) 건물 설계상 발생하는 외부공간에 부득이하게 관리상 출입이 있을 수 있으며, 외벽부분에 투시형 난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8)분양광고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상의 주민공동 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키즈라운지, 카페라운지 등)의 내부구조, 인테리어 시설, 비품 및 시설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며 본 공사시에는 허가 도면대로 기본소재로 시공 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과 CG에 표시된 도로, 건물목, 중앙분리화단 등을 포함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계획은 사업 주체인 부산시 또는 계획 주체에서 진행 예정인 사항으로 사업주체에서 향후 변경, 연기, 취소 될 수 있으며 당 사업과는 무관 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위치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공중 인허가청과 크기 및 위치 등을 협의 후 확정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74m²A형, 84m²C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홈페이지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품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은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 회사의 도산, 신제품의 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또는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세대에 설치되는 설비와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수량, 사양,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마감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 등을 포함하여 주변 환경과 부지 내 계획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의 시설물(기계식 타워주차장,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건본주택 내 평면도(설계도면), 시방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의 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건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건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건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의 연출용으로 시공된 부분은 전시용품목과 연관된 각종 배관, 배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사업시행인가(변경포함) 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건본세대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의 판단은 KS 에 준합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조경 등), 전시조명 등은 건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이므로 본공사 시 관련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결과에 따라, 건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 유상옵션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설비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콘센트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모형도 및 각종 자료 CG의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본 사업지 전면 중앙대로 확장 계획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모형과 모형에 표현된 주변 현황(건축물, 도로, 가로수, 가로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고 대지경계선의 외부는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단지 외부의 시설은 축소, 생략된 형태로 표현되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도 전면에 있는 CI, BI는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주차장

- 단지 차량출입구는 단지 서측 도로를 통해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입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부속동 활용성 및 하자 예방 등의 사유로 위치, 면적, 층별 내부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302대(경형 및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주차, 교통약자우선주차, 전기차충전주차, 기계식 주차, 오피스텔 포함)로 지상1층~지하5층과 기계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유효천정고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1개소, 완속 4개소, 총 5개소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구조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량 및 위치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법정 기준에 맞추어 2.3m 이상 설계되었으며,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동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정주차구획운영·통제는 관리주체 책임입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세대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빗공해,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벽체구획은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변경, 삭제 될수 있습니다.

11)부대복리 시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 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등)로 인해 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라운지, 카페라운지 등) 및 부대시설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센터 부분은 오피스텔, 골프연습장은 아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나 입주 시 공용으로 사용함에 동의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차량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 분리 및 보관시설(생활폐기물 용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위치 및 개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인접한 세대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 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회의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 등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게스트하우스는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인들의 편의를 위해 2년간 무상으로 임차 제공되나 운영에 따른 비용과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세대 관리비로 안분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 시설 중 카페라운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조식이 유상으로 제공 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의 결정에 따라 다른 공간으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을 통해 발렛 주차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과 운영 지침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고, 세대 관리비로 안분하여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12)전기기계 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으로 에어컨 직접 설치 시 벽체의 타공, 천정의 수정 등은 구조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 처짐 등은 하자보수가 제외됨.
-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헤드, 스위치, 콘센트 등은 상황에 따라 타입,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 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예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위치 및 장소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단자함은 법적 기준에 따라 세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킹(또는 홈오토포메이션)의 기능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한전주) 등 인입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사업자 협의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 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 2 등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 및 지상층에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아래 중계장치는 시공 상황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설치 위치
중계 장치	지하1층	PIT 2개소
	101동	지상 20층 EPS/TPS 2개소
	102동	지상 20층 EPS/TPS
	201동	지상 12층 EPS/TPS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 4가 되는지점에 측위 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 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벽체구획은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변경, 삭제 될수 있습니다.
- 옥외 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일부 세대 경관 조명에 의한 빛 반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는 경관조명, 안테나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 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 저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는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층고는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설비 시설의 공사에 따라 층고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13)세대평면 가구 및 마감재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개폐방향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정 기준 높이는 2.3m(욕실, 발코니, 우물천정 제외)이며, 최상층 세대의 거실 천정 높이는 약 2.9m(거실 제외한 천정 높이 2.3m)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실위치와 출입문폭, 보일러 시설등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후드배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은 보일러까지 설치되며 세대 내부로 인입되지 않고 화구는 전자레인지(하이라이트)로 대체 설치 됩니다. 주방에 가스배관이 연결되지 않음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창고, 욕실, 발코니, 실외기실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불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빌트인 가전제품 등으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한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인조강화석, 타일 등 석재,타일류와 주방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바닥재는 목재재질로 이루어진 강마루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배관, 가스밸브,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 및 제품, 사양 등은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테라스 도장·마감재질과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은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벽체는 석고보드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장고는 상부세대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해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분양건축물은 대형창호가 적용되어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유리 파손 시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분양사업자, 사업주체,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 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 및 공용부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물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방법 등)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건축법규에 따라 각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 됩니다. (최하층 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의 경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긴급상황 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공간은 계획된 용도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진동)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공간은 평면구조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문 유효폭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크기는 현장 시공 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침실 내부에 세대분전함 또는 세대단자함이 개별로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 개선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의 동등 수준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대파공간 조명은 본 공사 시 사용성 및 조도 개선 목적으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약세사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유지 등에 따라 미입주시에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수 있으며, 세대 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법 및 경보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가구, 쿡탑, 개수대, 약세사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안방, 침실에 설치되는 통합형 전자식스위치의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제조사별 제작 및 도색방식이 상이하여 서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용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내 소방시설물 배관작업으로 인해 각실 커튼박스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은 모델하우스 설치기준(시공 높이, 개폐여부, 창호 크기(FIX창호 포함))과 실제 설치기준이 변경될 수 있고, 안방, 신발장 팬트리 등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소방관 진입창은 인허가 당시의 소방심의에 따라 설치 되었으나, 사용상의 위험과 불편으로 인하여 시공 높이, 개폐여부, 창호 크기 등이 거실 창호와 연동되어 거실 창호와 함께 소방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5)교육관련 유의사항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 본 아파트의 통학구역은 초등학교는 온천초등학교 배치 예정이나, 배정 학급 및 학생 수 초과 등 기타 여건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함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함

■ 견본주택 안내

해링턴플레이스 명륜역 견본주택



- 위치안내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시청역 7번 출구)
- 운영기간 : 2025.11.07.(금) ~ 분양 종료 시
-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10:00~17:00
- ※ 정부방침에 의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견본주택 입장 및 상담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PC,모바일)

■ 공식홈페이지 : <http://www.해링턴플레이스명륜역.com>

분양문의

■ 해링턴플레이스 명륜역: ☎051-852-0101(10:00 ~ 17: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